

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①사업장명	②사업의 종류
	③대표자성명	④생년월일
	⑤근로자수	⑥전화번호
	⑦소재지	
승인 신청내용	⑧근로자수 명 (남 명, 여 명)	
	⑨휴업기간	
	⑩지급하려는 휴업수당	

⑪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구체적인 이유

「근로기준법」 제4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작성방법

- ⑨ 휴업기간"란에는 휴업의 시작일과 종료일 및 총 휴업일수를 적되,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.
- ⑩ 지급하려는 휴업수당"란에는 평균임금의 00% 또는 통산임금의 00% 등으로 적습니다.
- ⑪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구체적 사유"란에는 휴업의 사유 및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을 적되,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